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카드 운영 사업 업무 협약서

경상남도교육청, 농협은행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(이하 '카드'라 한다) 지급을 위한 지원 카드 운영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"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지급을 위한 운영사업"(이하 '사업'이라 한다)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**'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카드'** 및 카드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리)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① "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"란 학생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기본적 학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비을 말한다.

② "대상자"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초·중·고의 재학생 중 「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.

③ **"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카드"**란 농협은행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급을 위한 '카드'를 말한다.

④ **"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카드 관리시스템"**(이하 '시스템'이라 한다)이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카드 운영 사업을 위해 '경상남도교육청'의 요구에 따라 '농협은행'이 개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

⑤ "사용처"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말한다.

제3조(효력 및 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·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수당의 사용 및 정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③ 수당의 지급기간은 2026년 3월 26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
④ 농협은행은 수당의 지급 개시 전까지 수당지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, 경상남도교육청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용된 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정산·지급한다.

⑤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,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 측에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약사무)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의 협약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① '경상남도교육청'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.

1. '카드' 발급대상자 및 '시스템' 사용자에 대한 총괄 관리
2. '카드' 및 '시스템'에 대한 총괄 관리
3. '카드' 충전을 위한 예산관리
4. 바우처카드 포인트 사용 금액에 대한 대금 지급

② ‘농협은행’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.

1. ‘카드’ 의 제작 및 공급
2. ‘시스템’ 개발 및 운영 관리
3. ‘시스템’ 사용자에 대한 교육
4. ‘카드’ 사용 가맹점에 대한 관리
5. ‘카드’ 사용내역 및 등록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
6. 학생 대상으로 다자녀 학생 지원 카드를 활용한 금융 및 경제 교육 지원
7. 기타 카드 사업 운영과 관련 ‘경상남도교육청’ 과 협의한 사항

제5조(‘농협은행’ 업무의 세부사항) ① ‘농협은행’ 업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‘카드’ 의 상품명은 ‘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’ 로 하며 세부내용은 ‘농협은행’ 이용약관을 따른다.
2. ‘농협은행’ 은 ‘경상남도교육청’ 과의 협의에 따라 ‘농협은행’ 의 기존 카드와 다른 별도로 디자인(경상남도교육청 로고 및 명칭 등) 된 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
3. ‘바우처 카드’ 의 제작·발급 등은 ‘농협은행’ 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.
4. ‘시스템’ 의 개발 및 운영, 유지보수, 기능개선 등은 ‘농협은행’ 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.
5. ‘카드’ 이용 관련 불편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‘농협은행’ 은 ‘카드’ 의 제작비용, ‘시스템’ 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.

제6조(지급방법과 사용) ①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지급대상자 소유의 ‘카드’ 포인트로 지급한다.

② ‘카드’ 포인트의 지급대상, 사용기간, 사용 가맹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한다.

제7조(서비스제공 및 품질) ① '농협은행'는 수당 지급 대상 및 사용처 등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3일부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급에 따른 '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' 바우처 서비스를 실시한다.

② '카드'의 분실신고 접수 및 처리, 재발급 등의 업무는 '농협은행'이 수행한다.

③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은 '카드'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카드의 기능) ① '카드'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'카드'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잔액 환불 기능이 없는 카드
2. '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'의 취지에 맞는 사용제한이 가능한 카드
   가. 지역 제한: 경상남도 내
   나. 가맹점 제한 등: '시스템'에 등록된 가맹점 및 품목
   다. 사용 기한: 2026. 11. 30.까지 사용 가능 (이월 누적 등 확인)
   라. 잔액 환급: 불가능
3.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

② '카드'의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, '경상남도교육청'의 요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.

제9조(미사용 포인트의 소멸) ① 사용기한인 202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미사용 포인트(이하 '미사용 포인트'이라 한다)는 자동으로 소멸한다.

② '농협은행'는 '미사용 포인트'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며, '미사용 포인트' 대해서 청구하지 않는다.

제10조(카드 사용 정산) ① '농협은행'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우처포인트 잔액을 집계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정산하여 '교육청'에 제공하여야 한다

② '농협은행'은 해당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지원대상자의 '카드' 사용내역을 '교육청'에 제공하여야 하며, 사업 종료 이후 미사용액 발생시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1조(민원처리 및 관리) '농협은행'은 협약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한 전담팀을 통하여 '카드' 이용과 관련하여 '대상자'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'경상남도교육청'은 '농협은행'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협조한다.

제12조(카드의 지식재산권)

① '카드'의 디자인, '시스템'과 관련된 저작권은 '농협은행'에 귀속된다. 다만, 경상남도교육청이 제공한 로고, 명칭 또는 '카드'의 디자인, '시스템'을 이 협약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② '농협은행'는 '카드'와 '시스템'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,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'농협은행'이 책임을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'카드' 또는 '시스템'에 경상남도교육청을 나타내는 디자인 또는 명칭이 사용된 경우, 이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부터 '농협은행'은 해당 디자인 또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단, '대상자'에게 이미 배포되어 사용 중인 카드는 예외로 한다.

제13조(가맹점 수수료) '카드'의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기준으로 '농협은행'에서 책정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따른다.

제14조(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)

① '시스템'은 '경상남도교육청'와 '농협은행'이 상호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'농협은행'의 책임으로 개발한다.

② '경상남도교육청'은 '시스템'에 대하여 '농협은행'과 동일한 접근 권한을 가지며, '카드' 사용 관련 통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.

③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은 수당 지급을 위한 바우처 카드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'시스템' 개발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정보제공 및 관리)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상대방은 협약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 유지) ①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모든 거래정보(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)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, 누설,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, 본 협약상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되는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.

제17조(손해배상책임 등) 본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을 위반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·보상하여야 한다.

제18조(협약의 승계) 인수·합병 등으로 인해 협약당사자의 경영권이 다른 자에게 승계된 경우 본 협약 상의 권리·의무는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승계한다.

제19조(협약의 개정 및 해지) ①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은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의해 본 협약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.

② '경상남도교육청'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으로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'농협은행'에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고 중도 해지할 수 있다.

1. '농협은행'이 관계 법령 또는 본 협약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'경상남도교육청'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
2. '농협은행'의 부도나 '농협은행'에 대하여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절차 개시가 있는 경우
3. '농협은행'이 양 당사자가 체결한 "업무와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협약"을 위반하거나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
4. 공익을 위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5. 협약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

③ 본 협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의 제·개정, 정부의 규제,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시정조치,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으로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한 개정(또는 해지)이 불가피한 경우 '경상남도교육청' 또는 '농협은행'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본 협약을 개정(또는 해지)할 수 있다.

제20조(양도금지)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은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권리·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21조(협약의 해석) ①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(조례 등 자치법규 포함) 또는 관련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.

② 본 협약의 당사자간의 문제에 관한 법정 분쟁의 1심 관할 법원은 '경상남도교육청'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22조(기타 특약사항) 본 협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이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안별로 별도 계약서나 추가협약서 및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다.

제23조(성실이행의 원칙)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은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상호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상호 협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행하여야 한다.

제24조(클린계약) ①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은 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호간에 직·간접적으로 금품제공, 향응제공,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.

② '경상남도교육청'과 '농협은행'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, 이를 인지한 일방이 협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제25조(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등) ① 협약기관들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해야 하며,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

② 경상남도교육청 및 농협은행은 본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각종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자가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제26조(자료 요청) ① 경상남도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대하여 대상자 자격 오류 확인, 중복 수령, 카드 신규 발급, 농협 거래 확인, 통장 개설불가 확인·설명, 지원금 지급·정산, 잔액 확인 등 사업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7조(기타 업무처리)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처리는 '경상남도교육청', '농협은행'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

② '경상남도교육청', '농협은행'의 협의 통보 및 의견표시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8조(비용부담)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업무협력을 위해 드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29조(운영) 본 협약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로 연락담당자를 둔다.

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의 대표자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2월 23일

경상남도교육청
GYEONGSANGNAM DO OFFICE OF EDUCATION

NH농협은행

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

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천 동 현